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6. 1 선고 2017가단111114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

피고1. A 주식회사

2. B

변론 종결2018. 5. 11.

판결 선고2018. 6. 1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들은 연대하여 188,695,989원과 그 중 187,770,000원에 대하여 2017. 12. 15.부터 2018. 4. 26.까지 연 9%,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,

나. 피고 A 주식회사는 276,321,889원과 그 중 183,150,000원에 대하여 2017. 12. 15.부터 2018. 1. 8.까지 연 9%, 90,483,800원에 대하여 2017. 12. 26.부터 2018. 1. 8.까지 연 12%, 각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가. 피고 1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나. 피고 2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김진철

별지